

2002. 8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설명자료

2002. 8

금융정책국

61-1

목 차

1. 대부업의 정의	1
2. 대부업 등록요건과 절차	2
3.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과 적용대상	4
4. 대부업자의 영업시 준수사항	6
5.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연체이자율 제한	7
6. 불법 채권추심행위 금지	8
7.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체계	9
8.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0
9. 대부업법상의 벌칙 및 과태료	11
10. Q & A	12
1) 최고이자율(연 66%)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12
2) 3,000만원을 넘는 과잉대부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13
3) 지자체가 사채업자를 감독할 수 있겠는가?	14
※ 대부업 영위 허름도	15

1. 대부업의 정의

- 대부업은 금전을 대부하거나 중개, 또는 어음할인·양도 담보등의 방법에 의해 금전의 교부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임
 - 어음(채무증서)을 주고 금전을 교부받거나,
 - 부동산등을 양도한 형식으로 하여 금전을 교부하되 금전을 상환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주는 양도담보도 대부업에 포함
 - 전주와 차입자 사이에서 금전대부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도 대부업에 포함
- 금전대부업무를 업으로서 영위하는 자를 기존 금융기관은 “여신금융기관”으로, 사채업자는 “대부업자”로 구분
 - 대부업자만 시·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대부업 등록도 제외)
 - ① 월평균 대부잔액이 1억원이내이고 대출자수가 20인이하로서 생활지, 일간지, 인터넷, 전단지등 모든 형태의 광고를 하지 않는 소규모업자가 하는 대부
 - ② 자금차입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우려가 없는 자가 하는 대부
예) 국가·지자체가 대부하는 경우, 사업자·노동조합이 그 구성 원에 대부하는 경우 등

2. 대부업 등록요건과 절차

□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등록없이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는 영업소가 소재한 특별시·광역시·도에 등록해야 함

○ 2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영업소가 있을 경우 각각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

※ 현재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동법 시행일부터 3개월이내 까지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함

○ 등록하지 않고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등록 결격요건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음

- 동법 시행당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 결격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등록절차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

-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최대출자자 및 임원의 성명, 등록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영위하고자 하는 대부업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 시·도지사는 등록일자·등록번호를 기재한후 등록증을 교부

변경등록 및 영업폐지

- 대부업자가 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15일이내에 시·도지사에 변경등록을 해야 함
- 대부업자는 영업폐지시 14일이내에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함

등록수수료

- 대부업자가 등록시 부담하는 등록수수료는 영업소당 10만원이내에서 시·도가 조례로서 정하는 금액으로 함

3.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과 적용대상

□ 정부는 주로 월단위로 대부가 이루어지는 사채의 특성을 감안하여 월리 5.5%를 기준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을 연 66%(월5.5%)로 설정

※ 최고이자율은 등록 대부업자와 등록없이 사실상 영업하는 대부업자에 모두 적용

○ 이자율 산정에 있어 사례금·할인료·수수료·연체이자·선이자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

- 따라서 대부업자가 받는 연체이자율도 최고이자율(연66%)의 제한을 받음

※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다만, 대부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으므로 최고이자율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부대비용은 당해 거래의 체결 및 변제와 관련한 신용조사비용·담보설정비용등 사채업자가 수취 즉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금액등이 주로 해당

()

□ 대부업법에서는 최고이자를 초과한 이자지급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규정

- 최고이자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규정하고 기지급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 서민이 최고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돌려 받을 수 있음

□ 최고이자율 적용금액

- 1회 대부원금이 3,000만원까지인 경우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므로
- 3,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대부하는 경우 **3,000만원**
까지는 최고이자율이 적용되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음

□ 최고이자율 적용대상: 개인 및 소규모법인

- 적용대상 소규모법인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
조치법상의 소기업^{*}임
 - 2000말기준으로 전체기업의 96.9%가 해당되므로 대다수
소규모기업의 보호에는 문제가 없음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상시근로자 50인미만), 기타업종(10인미만)

** 2000말 277.7만개(전체의 96.9%)

- 중 · 대기업은 과도한 이자부담에 대해 스스로 보호 가능
하므로 최고이자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4. 대부업자의 영업시 준수사항

□ 대부계약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체결시 다음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함
 - 대부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 계약일자, 대부금액, 대부이자율(연 이자율 포함)
 -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 당해 거래에 관한 일체의 부대비용
 - 손해배상액,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등

□ 영업소 게시사항

-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 · 이자계산방법 · 변제방법, 대부업 등록번호등을 영업소마다 게시해야 하고
 - 대부계약의 체결시 거래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함

5.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연체이자율 제한

□ 연체이자율 제한 대상

- 연체이자율 상한은 금융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을 통해 대부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기관(제도권 금융기관)에 적용
 - 은행, 보험,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신협등
- * 여신금융기관은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지 않음

□ 연체이자율 제한내용

- 여신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20%이내에서는 자유로이 연체이자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 연20%를 초과하는 연체이자율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이자율의 1.3배이내로 하되 최고이자율(연66%)은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 현재 은행·보험등의 연체이자율은 대부분 연20%이하이므로 큰 영향이 없으나

- 연체이자율이 20%가 넘는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등 서민금융기관은 연체이자율 상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임

□ 금감위는 연체이자율 상한을 어긴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 이를 어긴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부과 가능

6. 불법 채권추심행위 금지

□ 대부업법은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 폭행·협박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
-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는 방문 등을 통해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경우 벌칙을 과하도록 하고 있음

- 폭행·협박: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는 방문등을 통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록없이 대부업을 하는 자 모두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관한 조항을 적용받음

7.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체계

- 시·도지사는 등록받은 대부업자(영업소 기준)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
 - 시·도지사는 대부업자에게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대부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음
 - 대부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당해 대부업자가 다른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에 명령내용을 통보
- 대부업자가 동법 또는 시·도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를 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대부계약서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또한, 시·도지사는 대부업자에 대한 전문적 검사가 필요할 경우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 금감원 검사대상 대부업자는 2이상의 다른 시·도에 영업소가 있거나, 대부잔액이 10억원이상인 대부업자등임
 - 금융감독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시·도지사에 등록 대부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연간 대부액의 0.01%이내에서 시·도가 조례로서 정하도록 함

8.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거래상대방간의 분쟁해결을 위해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금융·법률분야의 전문가로서 시도지사가 선임하는 5인으로 구성
 - 금융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 변호사 또는 회계사
 - 소비자단체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 금융·대부업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 금융·법학을 전공한 교수
-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분쟁조정안을 의결함
 - 분쟁당사자에 대해 당해 분쟁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고
 - 분쟁조정에 대하여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지 않아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안의 수락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9. 대부업법상의 벌칙 및 과태료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대상

-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업 등록을 한 자
- 폭행·협박·위계등을 통해 채권추심을 한 대부업자* 및 여신전문금융기관

*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 포함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대상

- 최고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 포함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

□ 과태료(2천만원) 부과대상

-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대부계약 체결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 내용에 기재할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한 자
- 대부조건을 영업소에 게시하지 않거나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10. Q & A

(1)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연66%는 현 사채이자율 수준을 고려할 때 너무 낮아 사채업자의 양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 정부는 등록을 최대한 유도할 수 있도록 최고이자율을 연66%(월5.5%)*로 법상 한도(70%)에 근접하게 설정

* 주로 월단위로 대부가 이루어지는 사채의 특성을 감안하여 월리를 5.5%로 설정하고 이를 연리로 환산

- 대부업법 시행시 사채업자중 일부만이 대부업자로 등록하고, 나머지는 등록을 기피하여 음성화하는 경우도 예상되나

-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적극적인 영업을 하기는 어려우며
- 등록 대부업자는 신인도·인지도 상승으로 광고비, 조달금리, 대손율이 감소하는 등 원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법시행초기에는 대부업자 등록이 부진할 수 있으나

-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부업자 등록을 통해 법을 지킬 의사가 있는 선의의 사채업자 중심으로 사채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

* 일본의 경우도 대부업법 시행(83)시 사채업자의 10%수준만이 등록 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대형 상위업체중심으로 사채시장이 운영되고 있음

(2) 3,000만원이하 소액대출에 대하여 최고이자율을 제한할 경우 사채업자들이 과잉대부를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 현재 대부분의 사채업자들이 서민에 대해 대출하는 규모는 1,000만원 미만임
 -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신고를 분석시 대출금액이 1천만 원미만인 경우 전체의 83%수준이며,
 - 3,000만원이상 차입한 신고자는 전체 신고자의 5%수준
- 최고이자율 제한 대상금액을 3,000만원으로 정할 경우
 - 대부분의 사채금액(전체의 95%)이 포함되므로 사채 이용자 보호에 충실할 수 있고
 - 대부업자가 사채이용자들의 자금수요를 무시하고 3,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차입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3,000만원이상의 대출을 강요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 ※ 3,000만원이상의 대출을 강요하여 높은 이자율로 계약을 체결하고 금액 초과분을 즉시 상환받는 등의 편법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사채이용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실질적인 차입금을 기준으로 최고이자율은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벌 가능

(3) 지자체가 사채업자를 감독할 수 있겠는가 ?

- 사채업자는 전국적으로 산재하여 있으므로 금감위와 같은 중앙행정조직이 감독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 사채업자에 대한 감독은 일반 금융기관과 같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행정적인 단속이 더 중요 하므로
 -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측면이 있음
- 또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감독체제를 보완하였음

* 2이상의 시도에 영업소가 있거나 대부잔액이 10억원이상인 대부업자등

※ 참고로 새마을금고의 경우도 그 인가업무가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음

<대부업 영위 흐름도>

